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59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17.

발의자 : 이용선 · 김종민 · 박지원

이재관 · 황희 · 고민정

김영호 · 염태영 · 권향엽

허성무 · 강준현 · 박해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. 또한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이 인상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

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제3항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90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초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<p>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<u>900만원</u>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</p>	
<p>가. ~ 라. (생 략)</p>	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마. 초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</p>
<p>2. · 3. (생 략)</p>	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~ ⑪ (생 략)</p>	<p>④ ~ ⑪ (현행과 같음)</p>